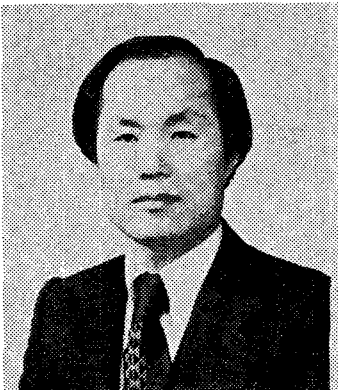


「환경보전법」 개정 방향과 기업의 대응

이 글은 지난 8월 29일 대한상공회의소가 주최한 제 47 차
산업사회 질적수준향상토론회에서 강사로 나선 본 협회 안 기
희 개발부장의 강연을 발췌한 것이다.

—편집자 注—



안기희 / 본협회 개발부장

1. 환경보전법의 의의

환경보전법은 환경법 중 가장 기본되는 법으로
서 「環境의 適正·利用·管理·保全에 관한 法
規範의 總體」라고 정의된다.

이러한 뜻에서 1970년대 후반까지의 「先成長
·後保全」에 의한 의욕적인 경제활동에 의하여
배출시설의 공해방지에 초점을 맞추던 「공해방
지법」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며, 한마디로 환경에
대하여 환경인의 책무로서 적정하게 이용·관리
·보전함으로써 후세인에게까지 쾌적한 환경을
물려줄 수 있는나」라는 인간행위의 규범에 최대
관심을 두게 된다.

환경을 「人間을 둘러싸고 있는 주위의 一切」
으로 정의할 때 이에 대한 법적 보호대상은 다
음과 같은 몇가지 측면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첫째, 「인간자신에 의한 인간환경의 합리적 형성」이라는 적극적 측면에서 파악할 수 있다. 여기서는 환경자원의 개발과 이용 및 관리의 면이 강조되고 공공용지, 일반토지, 자연자원 등이 포함되며, 이를 위한 공원, 주택단지, 도로, 댐, 해양, 水利 등이 이 법의 규제 및 관리대상이 된다.

둘째, 「환경에 관련된 인간행동의 규제」라는 소극적 측면에서 파악된다. 이 규제의 대상은 환경을 침해할 때 그 행동의 규범이다.

따라서 이러한 의미에서의 환경규제는 환경을 오염시키는 행동을 규제하고 나아가 환경을 적정하게 이용·관리·보전하는 조치가 포함되지 않으면 안된다.

비교적 생태계의 自淨能力이 풍부하던 공해방지법 시대에는 「환경에 관련된 인간행동의 규제」라는 소극적인 측면이 강조되어 왔으나 울산·온산 등 공업단지의 피해가 사회문제화되기 시작한 1970년대 말에 이르러서는 이 문제해결의 접근방법이 사전예방적인 환경법적 성격으로 전환됨에 따라 국가와 국민의 관심도 소극적에서 적극적 측면으로 확대되는 경향이며, 이제 환경보전법은 유한한 국토의 환경용량(environmental capacity)의 초과라는 관점에서 환경의 적정관리라는 합목적적 형성을 더 강조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그러한 적극적 측면이 강조되는 이유는 과도한 오염원의 배출에 의한 일부공단 등의 주민의 집단행동도 문제거니와 環境權을 의식한 주민의 환경에 대한 욕구가 폭발적으로 증대하는데도 그 요인을 찾을 수 있다. 그러므로 종래와 같은 환경문제에 대한 대중요법적(policing)으로 진압하기 보다 헌법의 환경권 이념을 근본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적정관리적(managing)인 접근방법으로 시급히 전환되어야 한다는 것이 본 법의 가장 중요한 과제로 등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2. 환경보전법의 주요특질(현행)

현행 환경보전법은 다음과 같은 몇가지 특질을 가진다.

(1) 환경의 적정관리·배분에 관한 것이다.

전국토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거시적·종합적

적극적 관점에서 생활환경은 물론 자연환경을 적정하게 관리함으로써 현세대는 물론 다음 세대에 이르기까지 영속적인 국가발전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법이다. 그러한 뜻에서 이 법은 기업활동을 단순히 제약 내지 규제하는 법이 아니라 유한한 환경자원을 공적으로 조정하는 관리법 내지 분배법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미국의 환경정책법(National Environmental Policy Act)은 바로 현재인은 물론 장래인까지도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권을 享受하도록 하며 사회적·경제적·자연적 욕구를 충족시키도록 배려한 법이라 할 수 있다.

(2) 환경기준의 유지를 위한 배출시설의 규제법이다.

인간은 생명체인 이상 그 생명체를 적정하게 유지할 일정한 환경기준의 유지를 필요로 한다.

이 법의 가장 중요한 부분의 하나가 바로 배출시설을 허가제로 규제함으로써 허가→사전신고→개선명령→조업정지→이전명령→허가취소 등 일련의 환경행정조치를 거쳐 환경기준의 유지를 도모하고자 하는데 있다. 이 허가규제는 환경에 대한 특정한 허용기준제를 채택하여 집행하는 방법으로서 주로 환경에 어떠한 변경이 가해질 경우에 미리 허가를 받도록 하는 규제적 조치이다. 이 허가제도는 그 기준이 높으면 장래의 오염배출활동을 억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예방적 조치의 성격을 가진다.

환경기준과의 관계는 환경기준이 환경보전을 위하여 요구되는 환경 그 자체의 질적수준을 수치로 표시한 희망적인 기준이라면, 배출허용기준은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최대허용치의 농도 기준으로써 환경기준의 유지를 위하여 요구되는 규제기준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환경기준의 성격이 환경행정의 목표 내지 이정표의 성격을 가진데 비하여 배출허용기준은 언제나 법적 구속, 배출부과금, 벌과금의 산출 근거가 된다.

(3) 개발에 앞서 환경영향평가를 이행하는 법이다.

환경영향평가(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란 인간활동이 환경에 변화를 유발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 이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가를 분석하고 결정하는 절차를 말한

다. 法上 환경영향평가제도란 환경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개발사업의 정책을 결정함에 있어서 환경영향의 정도와 영향의 범위를 미리 예측·평가하고 그 방어를 위한 여러대안(alternative)을 비교 검토하여 성안된 보고서(안)를 관계기관과 주민에게 공표한 후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참작하여 개발의 적·부과 수정을 가능하는 일련의 動的 절차를 이행하는 제도를 말한다. 오늘날 평가 대상을 공공개발에서 민간개발까지 확대하는 경향이며 주민참여의 절차화는 세계적인 보편적 사항이다.

(4) 특별대책지역에 대한 총량규제에 관한 법이다.

과학기술의 미분화와 성장초기단계에는 환경에 대한 개별규제로서도 그 효과가 있지만 인구와 산업이 집중되고 기업의 규모가 거대화·대규모화됨에 따라 오염과 자연생태계의 변화현상이 복잡화·다양화로 일정한 지역을 묶어 특별한 관점에서 종합적·집중적으로 접근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다. 이러한 이유로 특별대책지역이 지정되면 토지이용의 제한과 새로이 설치되는 배출시설의 설치가 제한된다. 그리고 특별대책지



역이 지정되면 개별시설이 농도규제에서 지역규제인 總量規制를 실시하게 된다. 이것은 바로 지역규제를 의미한다.

(5) 자연자원을 内部化하는 법이다.

전통 경제학에서 자유재로 인정되던 비경제적 요소인 공기·물 등의 공공재를 환경자본화하여 가격개념화함으로써 일정한 허용기준을 초과할 경우 排出賦課金을 부과하는 법이다. 外部不經濟(external diseconomies)는 하나의 경제주체가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상태에서 다른 경제주체에 불이익을 초래하게 되는 현상으로 정부가 개입하여 외부불경제의 발생을 방지할 조치를 취하게 하든지 피해자에 대해 직접 보상을 하게 하거나 또는 간접적으로 徵稅를 통해 이를 수행하려는 대책을 강구하게 된다. 생태계의 편익/비용분석 계산의 내부화 수단은 배출부과금 이외에도 환경세, 오염권 판매제, 벌금 등 다양하게 입법화되고 있는 경향이다.

3. 개정사유

환경여건이 변화되면 법도 그에 대응하여 변화되어야 한다.

우선 국제적으로는 UNEP·OECD의 全地球管理의 관점에서 범세계적인 환경대책이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성장한계론이 대두되면서부터 생태계의 순환능력이 지연되고 탄산가스 위기설이 감도는 가운데 汚染者 負擔原則(polluter pay principle)과 환경영향평가의 의무화가 강조되고 있다.

국내적으로도 한정된 국토의 환경용량이 지속적인 성장활동으로 인한 과도한 폐기물 등으로 말미암아 생태계의 순환과정에 부담을 초래하면서부터 공단지역을 비롯 대기, 하천, 토양 및 해양이 오염되어 사회문제화되고 있어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책이 사회적으로 요구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86 아시안게임과 '88 올림픽을 앞둔 우리나라는 맑은 공기, 청정한 물, 깨끗한 토양 및 수려한 자연경관 등 쾌적한 환경속에서 세계적인 잔치를 성공적으로 치루어야 한다는 국내외적인 환경여건의 급변화도 최대 관심사이다. 법적 주요 개정 이유로는 환경보전에 미치는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민간인이 시행하는 사업까지 확대하고, 他法律에 의해 보호받지 못하는 야생 동·식물의 생태계를 근원적으로 보호하며, 배출부과금에 기본부과금을 도입하여 방지시설의 정상가동을 유도하는 한편, 비산분진의 발생을 억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기타의 법 시행상의 문제점을 보완, 개정하여 환경을 적정하게 관리·보전할 수 있도록 법률의 현실 적응성과 합리성을 제고하고자 하는데 있다.

4. 환경보전법의 개정방향

(1) 환경영향평가대체를 민간개발까지 확대

현행법은 평가대상을 法命에 정하는 일정 규모이상의 공공개발에 한정하여 행정기관, 공공단체 및 정부투자기관의 長이 평가의무자로 되어 있으나 개정안은 민간개발까지 확대하고 민간개발의 주체도 개발전 평가를 의무화하고 있다. 이러한 평가대상의 확대 이유는 오늘날 정유공장, 매립단지 등 민간개발의 대형화를 유도하고 있고, 이들 개발로 인하여 지역 환경권을 누릴 지역 국민들에게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경우에는 집단행동으로 유발된 경우가 있어, 이들 국민들이 스스로 지역환경을 보전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자 함에 있다. 이러한 환경에 대하여 개발에 앞서 영향평가를 의무화하고 있는 것은 보편적이며 이런 평가개념은 일정 규모가 아니더라도 지역개발에 앞서 적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야생동·식물의 보호

① 환경청장은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 수산업법, 산림법 등 다른 법률에 의해 보호를 받지 아니하는 파충류, 양서류, 곤충류 등 동물류와 식물류(이하 “미보호 야생동·식물”이라 한다)로서 그 보전이 위태롭게 되었거나 위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자연생태계의 균형유지 및 멸종방지를 위하여 이를 보호하여야 한다(안 제 9조의 2①).

② 미보호 야생동·식물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환경청장이 告示하는 동·식물(이하 “특정 야생동·식물”이라 한다)을 채취, 포획, 이식, 수출, 가공, 보관하지 못한다. 다만 환경청장의 인가, 허가,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

러하지 아니한다(안 제 9조의 2②).

③ 미보호 야생동·식물중 국제협약에 의하여 거래가 규제되는 동·식물류 또는 이를 이용한 가공품을 수출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안 제 9조의 2③).

이러한 야생동·식물이 法益保護對象으로 등장하게 된 배경은 지금까지 과도한 농약살포와 일부 몰지각한 밀렵꾼의 무분별한 채취 포획 등으로 생태계의 교란 및 희귀한 종의 멸종 등으로 먹이사슬의 순환능력이 우려되는 바가 크기 때문에 이러한 미보호 야생동·식물을 보호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신설하여 보호할 조치가 시급했기 때문이며, 특히 특정 야생동·식물을 채취, 포획, 수출 등을 금지하여 희귀종을 보호되 극히 학문상 필요한 경우 예외규정을 두어 허가 승인을 받도록 신축성을 부여하고 있다.

(3) 배출시설의 설치허가제한 등

환경청장은 배출시설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배출시설로부터 배출되는 오염물질 등으로 인하여 환경기준의 유지가 곤란하거나 주변 환경에 현저히 유해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지역의 배출시설에 대하여는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안 제 15조 제 2항).

개정취지는 각 사업장에서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오염물질을 배출한다 해도 지역특성에 따라 환경기준의 유지가 곤란하거나 상수원 등에 현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배출시설은 입지초기단계에서부터 사전허가를 제한하고자 함에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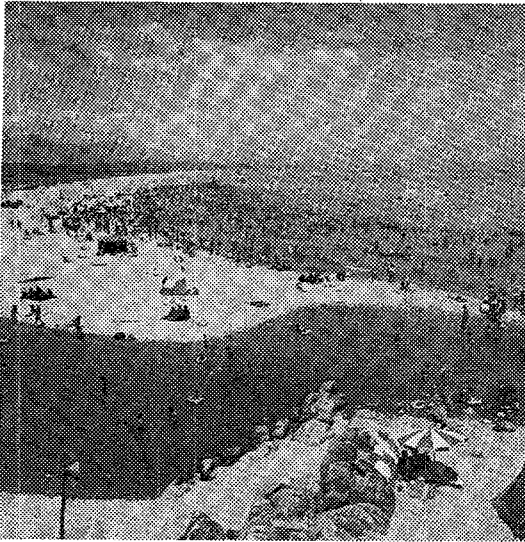
한편 배출허용기준이하로 배출되는 시설에 대하여는 환경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방지시설을 면제할 수 있다.

또한 사업자는 동일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분뇨 또는 생활하수를 폐수와 병합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자는 오물청소법 제 15조 또는 제 16조의 규정에 의한 汚水淨化施設이나 분뇨정화조를 설치한 것으로 본다(안 제 15조 제 5항).

이 규정의 개정취지는 동일 사업장내에서 오수와 폐수를 병합처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업자의 부담을 줄이고자 함에 있다.

(4) 기본배출부과금제 도입 등

① 배출부과금의 賦課時點 조정 : 배출부과금의 부과시점을 「개선명령 또는 이전명령의 원



인이 되는 오염물질을 채취한 날로부터」로 하였다.

일반적으로 배출부과금제도라 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기업에 일정한 유예기간을 주어 오염방지시설의 설치를 요청하고 그 기간이 경과해도 배출기준을 지키지 못하는 기업에 대하여 상당한 부과금을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 즉 배출부과금보다 적은 비용으로 배출을 감소할 수 있는 기업은 이론적으로 부과금의 과징을 피하기 위하여 그 배출을 억제하는데 목적이 있다. 그러나 배출부과금 보다 적은 비용으로 배출물질의 배출을 억제할 수 없는 기업은 배출부과금을 지급하는 쪽을 택할 수 있다. 그렇지만 계속적인 억제에 대한 誘引을 받게되어 피할수는 없다.

지금까지의 현행규정은 부과시점이 개선명령 또는 이전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있는 점을 역이용하여 개선명령 또는 이전명령을 받기 전에 이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개선완료 함으로써 부과금을 납부하지 않으려는 의도를 배제하려는 것이다.

② 배출부과금에 기본부과금제를 도입함으로써 지금까지 일정한 기준초과에서 기업활동을 해오면서 대기나 물의 과도한 사용에 대한 의무

의 불이행 내지 일종의 사용세에 해당하는 근본적인 책임을 지우려는데 그 뜻이 있다.

이렇게 하여 부과된 부과금은 환경오염방지금의 재원으로 충당되어 ㉠환경오염방지사업,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 ㉢사업자의 방지시설 투자에 대한 장기처리 용자를 위한 기금으로 조성된다.

(5) 측정대행자의 지정요건 신설

① 自家測定者가 되고자 하는 자는 환경청장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안 제 22 조의 2 ①).

② 환경청장은 공익상의 필요시설이 지역적 분포 또는 측정대행의 수요를 감안하여 측정대행자의 수를 제한하여 지정할 수 있다(안 제 22 조의 2 ②).

③ 환경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측정대행자가 측정할 수 있는 배출시설의 규모와 구역, 측정항목 등을 제한할 수 있다(안 제 22 조의 2 ③).

④ 이 법의 방지시설업 등의 결격사유 및 지정취소 등은 이 지정에 준용한다(안 제 22 조의 2 ⑤).

이러한 측정대행자의 지정요건 및 측정대행자의 지정결격사유 및 지정취소 등에 관한 규정의 신설은 지역배출시설의 수요에 알맞는 지정과 환경관이 확고한 지정자를 선정함으로써 과다경쟁에 의한 덤핑행위 등을 사전에 봉쇄할 수 있고 대행자가 보다 환경보전상의 공익업무에 신의성실로 임할 수 있도록 토대를 구축하게 된 것이다.

(6) 배출시설 관리인에 대한 사업자의 책임

사업자는 배출시설관리인이 그 관리내용과 준수사항을 철저히 이행하도록 감독하여야 하며 배출시설관리인이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正常稼動을 위하여 필요한 요청을 할 때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안 제 23 조 제 2 항).

이렇게 사업자의 관리인에 대한 철저한 감독과 함께 관리인의 의무이행의 확보를 위한 환경투자 등의 적절한 요청 등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책임규정을 신설한 이유는 배출시설관리인에 대한 적격자의 선임에서부터 정상가동의 여부 등을 철저히 감독하여야 할 자를 사업자

의 책임으로 법제화함으로써 종래의 공무원 또는 공장장 책임으로 인한 무책임한 관리인 선임이나 과다오염배출에 대하여 사업주는 전혀 모른다는 사실의 변명은 통하지 않게 되었다.

그리고 오늘날 이윤이 없다는 이유로 배출시설이나 방지시설에 대한 환경투자에 매우 인색하여 선의의 배출시설 관리인이 간혹 피해를 당하는 일이 있어 왔으나 이 개정안은 사업자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에 관하여 환경투자를 할 경우 배출시설 관리인의 의견을 청취하여 적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거절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 또한 넓게는 배출시설 관리인은 그에게 위임된 정당한 임무수행으로 인하여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아야 한다는 점이 배려되어 있다.

(7) 飛散粉塵의 규제

① 환경청장이 飛散粉塵으로 인한 대기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안에서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비산분진을 발생시키는 사업을 하거나 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청장이 고시하여 정하는 바에 따라 비산분진의 발생을 억제하는데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조치하여야 한다(안 제 26 조의 2).

② 환경청장은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이나 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업을 하는 자에 대하여 당해사업 또는 시설 등의 사용중지를 명할 수 있다.

이 규정의 개정취지는 레미콘, 골재야식장 등의 일정한 배출구가 없는 데서 비산분진을 발생시키는 사업은 배출허용기준에 의한 관리가 매우 어려운 실정이므로 이의 시설기준이나 조치사항을 별도로 정하여 효율적으로 배출원을 관리하고자 함에 있다.

(8) 자동차 제작에 있어서의 排出濃度基準 등 강화

① 자동차를 제작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동차 배출가스 농도기준에 적합하도록 제작하여야 하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시험검사를 한 후 그 결과를 환경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안 제 30 조 제 1 항).

② 환경청장은 제출된 결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확인검사 및 시험시설의 조사를 할 수 있

다(안 제 30 조 제 2 항).

③ 환경청장은 자동차 배출가스의 성능이 배출가스 기준에 적합하게 유지되지 않을 경우 자동차 제작자 또는 수입업자에 대하여 당해 자동차에 대한 결함의 시정을 명할 수 있다(안 제 30 조 제 3 항).

④ 자동차 연료첨가제의 종류, 성상 등을 신고에 의해 심사할 수 있다(안 제 31 조 ②, ③).

이렇게 자동차 제작에 있어서 배출가스 농도 기준을 강화하는 이유는 오늘날 대도시의 경우 현행자동차의 배기가스로 인한 대기오염이 심화되자 이를 제작에서부터 근원적으로 줄이려는 뜻이며 이동식 배출시설에 대한 감독이 그만큼 어렵기 때문이다. 그리고 연료첨가제로 인한 각종 유해성 물질에 대한 환경적 심사가 환경청 관리체제로 들어오게 된 셈이다.

(9) 交通騒音防止施設 등

① 환경청장은 자동차 전용도로, 고속도로 및 철도의 신설 또는 확장으로 인하여 주거생활의 靜穩이 침해된다고 판단 될 때에는 도로 및 철도관리기관의 장에게 교통소음방지시설을 설치할 것을 명할 수 있다(안 제 32 조의 3).

② 위 교통소음방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환경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그리고 교통소음방지시설의 종류, 사업의 범위는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한다(안 제 32 조의 3 ③).

이것은 고속도로 및 철도인접 주거지역의 소음에 대한 정온보호와 형식적이거나 부적격한 방지시설의 설치를 지양하고자 함에 있다.

(10) 합성화학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그 성상 및 안정성 등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환경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合成化學物質은 그러하지 아니한다(안 제 42 조의 3).

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하며, 환경청장은 합성화학물질의 제조·수입업자에게 보고를 명하거나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또한 필요한 경우 합성물질의 제조, 수입 및 유통의 금지를 관계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안 제 42 조의 3 ②, ③).

이 조항의 신설은 화학공업의 발달에 따른 신

합성화학물질의 사용증대로 인하여 발생되는 보건위생상 및 환경보전상의 위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그 관리체계를 확립하고자함에 있다.

(11) 廳聞制度

환경청장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당해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안 제 62 조의 4).

- ① 배출시설의 조업정지 및 허가취소
- ② 방지시설업의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
- ③ 산업폐기물 처리업의 허가취소 및 영업정지

이 규정의 확대신설을 행정기관의 일방적인 행정행위를 지양하고 보다 민주적인 절차에 입각한 환경행정행위를 하려는 배려가 있다.

5. 금후의 과제

본 개정법안이 성공적으로 정착되려면 다음과

같은 몇가지 전제가 우선적으로 확립되어야 한다.

첫째, 국가의 영속적인 발전을 기하고 전국민이 환경권 개념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보전법령은 개발법령과 대등한 하위법령에서 벗어나 「국가환경정책기본법」으로 제정강화되어 개발법령보다 하위개념에서 개발과 보전의 상충관계를 적절히 조정하여야 한다.

둘째, 환경보전과 경제개발은 선·후의 별개문제가 아닌 하나의 통합된 정책으로 전환하여 개발초기단계에서부터 엄격한 영향평가와 국민참여를 유도하는 고위정책기관의 보전 우선적인 정책적 배려가 있어야 한다.

셋째, 환경투자의 효율이 단기적으로는 기업의 부담이 되나 장기적차원에서 국가 전체의 쾌적한 환경보전에 기여할 뿐 아니라, 국가의 지속적인 경제발전에도 원동력이 된다는 기업인의 투철한 환경윤리관이 확립되어야 한다.*

의식개혁 9대실천요강

정직 모든 생활은 정직에 원칙을 두고 새시대의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하여 불신품조를 과감히 추방한다.

질서 모든 생활의 기초를 질서에 두고 이를 체질화하기 위해 국민적 역량을 최대한 경주한다.

창조 왜곡된 미풍양속의 본질을 되찾아 민족정기와 전통을 창조적으로 계승·발전시킨다.

책임 모든 공직자는 청렴의무를 준수하고 무사안일등 고질적인 폐습에서 탈피, 스스로를 철저히 책임지는 풍토를 확립한다.

본분 각자가 자기본분에 충실하고 부여된 책임과 의무를 성실히 수행한다.

분수 생활주변의 고질화된 각종 낭비요소를 과감히 제거하여 분수에 맞는 생활자세를 정립한다.

주인의식 민주시민으로서의 주인의식을 가지고 사회의 부정·비리와 무질서에 대한 건전한 고발정신을 함양한다.

국민화합 지나친 이기주의와 뿌리깊은 파벌, 연고의식을 철저히 불식함으로써 국민화합의 기반을 확충한다.

가정교육 모든 교육은 가정교육에서 비롯된다는 점을 깊이 인식, 여성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어야 한다.

오염되고 후회말고

늦기전에 환경보전